



제 895 호

2009년 12월 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차 례

예 규

○예규 제2009 -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규정 1

공 고

- 공고 제2009 -165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공시송달 5
- 공고 제2009 -1664호 '09년 9월 2회차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7
- 공고 제2009 -1665호 '09년 10월 2회차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8
- 공고 제2009 -1666호 '09년 10월 3회차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9
- 공고 제2009 -16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10
- 공고 제2009 -1671호 2009년 11월 수시분 취·등록세 고지서 공시송달 11
- 공고 제2009 -1672호 2009년 11월 수시분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15
- 공고 제2009 -167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8
- 공고 제2009 -1679호 2009년 9월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
- 공고 제2009 -16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고 시

○구월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제2009-001호 구월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32

회 람								
--------	--	--	--	--	--	--	--	--

예 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2월 4일

남동구 예규 제6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택적 복지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선택적 복지제도는 적용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제2항과 제3항 중 “공무원”을 각각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를 “뜻”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 중 “공무원”을 각각 “적용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 직원”을 “모든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복지실태조사)

- ① 구청장은 적용대상자에 대한 후생복지의 수준과 예산을 점검하여 기존 복지재원을 선택적 복지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자에 대한 복지만족도 및 복지수요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선택적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의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300”을 “7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을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영유아보육법” 를 “「영유아보육법」” 으로,
“남동구 공무원” 을 “적용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
동구 소속 부부공무원 및 복지제도시행기관에 대해서는 가족포인트”
를 “적용대상자의 가족포인트”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 조직” 을 “조직” 으로, “전체공무원이 의
무적” 을 “전체 적용대상자가 의무적”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 을 “적용대상자” 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
제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
영 규칙」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는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폐지 이유

- 선택적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 공통포인트를 상향조정함으로서 적용대상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적용대상을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까지 확대 (제7조)
- 공통포인트를 3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상향조정 (제9조)
- 공무원 선택적 복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 (제19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구자택 외 2인
- 공 고 기 간 : 2009. 11. 30. ~ 2009. 12. 14.(15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접수일자	위 반 사 항				업체명 운전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일시	장소	차량 번호	신고내용				
2009.9.8	09.01(16:37-16:45)	상동세이브존	인천30바7536	정기정차여객유치	엄광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과태료10만원	
2009.9.14	09.08(10:42)	송내남부역	인천31바2325	정기정차여객유치	국제산업 (전경수)	인천 남동구 서창동	경고	
2009.9.21	09.15(19:58)	문학경기장-> 연수동 방면	인천30바2577	자동차표시위반	구자택	인천 남동구 간석동	과징금10만원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서·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미수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고지서 수령대상자께서는 납부기일 2009.12.16.까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453-2912)로 오셔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은행, 농협 또는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
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김옥란 외 95건
- 공 고 기 간 : 2009. 11. 30. ~ 2009. 12. 16.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09년9월2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 수취인 미거주 ·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납기내기간 2009. 12. 04일 (납기후일자-2009. 12. 31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 -2925 ,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2009. 12. 04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 가산금 징수 및 매1개월마다 과태료의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김정태 외 180건
- 공 고 기 간 : 2009. 11. 30. ~ 2009. 12. 16.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09년 10월2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
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
재·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
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
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
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손요옥 외 227건
- 공 고 기 간 : 2009. 11. 30. ~ 2009. 12. 16.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09년 10월3회차)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70호

공 고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성 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위촉일
박순일	공공기관(교육)	인천시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2009.11.27
박윤희	민간기관(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장	2009.11.27

2009. 12.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71호

취·등록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이상범외 51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09년 11월 수시분 취·등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9년 11월 수시분 취·등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서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09.11.30일을 2009.12.31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 12. 0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등록세 2009. 11월 부과분 공시송달내역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현주소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이상범	691123-*****	인천 남동 구월동	101001-2009-11-2-510-093248	이사감	1,557,090
2	취득세	임흥기	700223-*****	강원도춘천시석사동	101001-2009-11-2-510-093341	수령인없음	1,687,050
3	취득세	고영환	710322-*****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20-093288	수령인없음	806,000
4	취득세	전영호	371209-*****	인천 남동 구월동	101001-2009-11-2-521-092285	수령인없음	1,283,250
5	취득세	이진우	831114-*****	인천 남구 도화동	101001-2009-11-2-521-093271	수령인없음	1,766,800
6	취득세	고종복	621217-*****	인천 남동 구월동	101001-2009-11-2-521-093284	수령인없음	1,914,250
7	취득세	심정화	771023-*****	안산시상록구 본오	101001-2009-11-2-521-093296	수령인없음	1,913,680
8	취득세	박명순	571007-*****	인천 남동 간석동	101001-2009-11-2-521-093360	수령인없음	474,190
9	취득세	장옥임	611106-*****	인천 남구 도화동	101001-2009-11-2-530-093245	수령인없음	1,618,720
10	취득세	은지수	590224-*****	인천 남구 주안동	101001-2009-11-2-530-093273	수령인없음	907,830
11	취득세	김지영	710618-*****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1001-2009-11-2-530-093286	수령인없음	328,000
12	취득세	최재영	790104-*****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1001-2009-11-2-550-093236	수령인없음	465,380
13	취득세	백남철	750417-*****	인천 남동 간석동	101001-2009-11-2-550-093272	수령인없음	1,361,740
14	취득세	곽정홍	551205-*****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1001-2009-11-2-550-093279	수령인없음	1,412,180
15	취득세	방은기	620820-*****	인천 남동 구월동	101001-2009-11-2-550-093283	수령인없음	1,824,690
16	취득세	최운화	550910-*****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50-093313	수령인없음	955,130
17	취득세	이경명	390616-*****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60-093369	수령인없음	320,950
18	취득세	김혜숙	640212-*****	인천 남동 서창동	101001-2009-11-2-570-093259	수령인없음	636,820

19	취득세	이명선	560229-*****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70-093287	수령인없음	1,110,560
20	취득세	정판기	710807-*****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80-093268	수령인없음	1,008,700
21	취득세	박정자	480916-*****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80-093319	수령인없음	774,150
22	취득세	서인순	650711-*****	인천 남동 구월동	101001-2009-11-2-580-093334	수령인없음	1,104,950
23	취득세	조성민	820103-*****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80-093344	이사감	1,054,410
24	취득세	김혜숙	600305-*****	인천 연수구 동춘동	101001-2009-11-2-581-092244	수령인없음	391,590
25	취득세	나일주	480606-*****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82-092361	수령인없음	538,290
26	취득세	진미자	6105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1001-2009-11-2-583-092008	수령인없음	1,084,470
27	취득세	이경숙	861225-*****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583-093343	수령인없음	883,690
28	취득세	김귀수	680527-*****	인천 부평구 삼산동	101001-2009-11-2-650-090711	수령인없음	171,600
29	취득세	김미성	820518-*****	인천 남동 장수동	101001-2009-11-2-650-093240	수령인없음	1,813,090
30	취득세	이숙미	820130-*****	부천시소사구 송내	101001-2009-11-2-650-093247	수령인없음	1,415,540
31	취득세	이성준	570220-*****	인천 서구 겸암동	101001-2009-11-2-650-093330	수령인없음	673,210
32	취득세	이윤형	601216-*****	인천 남구 주안동	101001-2009-11-2-660-090762	수령인없음	44,980
33	취득세	곽상구	570428-*****	인천 남동 서창동	101001-2009-11-2-660-090842	수령인없음	15,670
34	취득세	안장기	550511-*****	인천 남동 수산동	101001-2009-11-2-660-090862	수령인없음	63,120
35	취득세	지수만	580204-*****	인천 남동 만수동	101001-2009-11-2-660-093300	수령인없음	632,090
36	취득세	윤원중	770925-*****	인천 연수구 청학동	101001-2009-11-2-670-093294	수령인없음	4,942,370
37	취득세	김영란	730725-*****	인천 남동 간석동	101001-2009-11-2-670-093308	수령인없음	3,285,160
38	취득세	김병훈	690312-*****	인천 남동 논현동	101001-2009-11-2-670-093357	이사감	2,998,540
39	취득세	신성환	610904-*****	부천시오정구 삼정	101001-2009-11-2-670-093361	수령인없음	4,341,390

40	취득세	고주녀	640615-*****	인천남구주인동	101001-2009-11-2-670-093364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3,150,360
41	취득세	조성우	640317-*****	인천 남동 논현동	101001-2009-11-2-670-093371	수령인없음	7,430,530
42	취득세	오은섭	720416-*****	경기시흥시정왕동	101001-2009-11-2-670-093372	수령인없음	4,583,410
43	취득세	김소연	740118-*****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101001-2009-11-2-680-092802	이사감	4,547,790
44	취득세	김봉이	400126-*****	인천남동논현동	101001-2009-11-2-680-092805	주소,거소, 영업소불명	5,415,530
45	취득세	박정자	591123-*****	인천 연수구 송도동	101001-2009-11-2-680-092821	수령인없음	4,516,630
46	취득세	홍인오	640823-*****	인천 남동 논현동	101001-2009-11-2-680-093276	수령인없음	1,412,180
47	취득세	김광준	670521-*****	인천 남동 논현동	101001-2009-11-2-680-093351	수령인없음	9,972,390
48	취득세	김광준	670521-*****	인천 남동 논현동	101001-2009-11-2-680-093352	수령인없음	9,705,320
49	취득세	한영석	630620-*****	부천시원미구 상동	101001-2009-11-2-800-091363	수령인없음	45,200
50	취득세	(주)아성에스앤피	120111-*****	인천 남동 고잔동	101001-2009-11-2-800-092985	수취인미거주	356,960
51	등록세	전미자	61052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2001-2009-11-2-583-092008	수령인없음	1,074,000
52	등록세	(주)아성에스앤피	120111-*****	인천남동고잔동	102001-2009-11-2-800-092985	수취인미거주	422,55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72호

주민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삼원기공외 35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09년 11월 수시분 주민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9년 11월 수시분 주민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서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09.11.30일을 2009.12.31일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 12. 0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009년 11월 부과분 주민세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세목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현 주 소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원)
1	특별징수주민세	삼원기공	1246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800-005860	수령거부	66,240
2	특별징수주민세	(주)플컴	1201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9-11-2-800-005873	수령거부	54,470
3	특별징수주민세	유니캡스	1101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9-11-2-800-005891	수령거부	39,900
4	특별징수주민세	(주)뉴페이브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800-005894	수령거부	39,290
5	특별징수주민세	동화판다	12011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4008-2009-11-2-800-005918	수령거부	28,320
6	특별징수주민세	정화산업(주)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660-005936	수령거부	22,620
7	특별징수주민세	이수일	6701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04008-2009-11-2-583-005952	수령거부	18,770
8	특별징수주민세	주식회사알에이온	120111-*****	인천남동남촌동	104008-2009-11-2-800-005955	수령거부	18,130
9	특별징수주민세	(주)진원파트너	110111-*****	인천남동만수동	104008-2009-11-2-560-005960	수령거부	16,330
10	특별징수주민세	대산글라스텍주식회사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800-005971	수령거부	14,460
11	특별징수주민세	(주)엠에스오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800-006008	수령거부	9,000
12	특별징수주민세	동화판다	12011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4008-2009-11-2-800-006010	수령거부	8,560
13	특별징수주민세	(주)엔피이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9-11-2-800-006017	수령거부	8,250
14	특별징수주민세	(주)씨앤아이티에스	120111-*****	인천 남동구 간석동	104008-2009-11-2-550-006051	수령거부	5,440
15	특별징수주민세	(주)희양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4008-2009-11-2-510-006063	수령인 없음	4,530
16	특별징수주민세	(주)뉴페이브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800-006075	수령거부	3,730
17	특별징수주민세	주식회사경영인택	1201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104008-2009-11-2-800-006077	수령거부	3,710

18	특별징수주민세	주식회사 이노폴드	120111-*****	인천남동구간석동	104008-2009-11-2-800-006078	수령거부	3,660
19	특별징수주민세	해동글로벌	1201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8-2009-11-2-800-006110	수령거부	2,540
20	특별징수주민세	(주)주원코리아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4008-2009-11-2-521-006117	수령거부	2,350
21	법인세할주민세	태영지에스산업개발	1201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4006-2009-11-2-510-000992	수령인 없음	1,012,560
22	법인세할주민세	메이저건설링	120111-*****	인천 남동구 간석동	104006-2009-11-2-551-000996	수령인 없음	12,641,910
23	법인세할주민세	심원	124611-*****	인천 남동구 논현동	104006-2009-11-2-670-001010	주소,거소, 영업소 불명	2,640,650
24	법인세할주민세	명인종합건설(주)	1246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04006-2009-11-2-510-001011	수령거부	255,640
25	종합소득세할주민세	김두용	8206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4004-2009-11-2-650-017747	수령인 없음	13,072,040
26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이영자	3403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005-2009-11-2-580-001208	수령인 없음	3,327,840
27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양철진	3408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4005-2009-11-2-510-001209	수령인 없음	1,627,090
28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양성일	491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005-2009-11-2-560-001213	주소,거소, 영업소 불명	474,140
29	양도소득세할주민세	하태근	6208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4005-2009-11-2-551-001219	이사감	2,895,480
3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김성철	650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4005-2009-11-2-650-001221	수령인 없음	3,302,320
31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이청우	3001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4005-2009-11-2-540-001225	수령인 없음	1,113,200
32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지우천	4808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005-2009-11-2-583-001232	수령거부	112,200
33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이서영	5404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4005-2009-11-2-583-001236	수령인 없음	393,460
34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임영희	6104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4005-2009-11-2-540-001239	수령인 없음	5,200,480
35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임금현	75120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4005-2009-11-2-582-001258	수취인미거주	459,710
36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음석범	8007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4005-2009-11-2-510-001261	수령인 없음	955,23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74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37조 규정 위반(시설물전부멸실)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규정을 적용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 실시)통지하였으나 불참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2 월 01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09. 12. 01 ~ 2009. 12. 15(15일간)
3. 행정처분 대상업소 내역

업 종	신 고 번 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일반음식점	남도-211	로또포장마차	최영자	남촌동 485번지 1층일부	시설물 무단멸실	영업소폐쇄	2009.12.01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행정처분일 : 2009.12.01
6. 사 유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8. 청문일 : 2009.10.05(월) 11:00
9. 공시송달청문일 : 2009. 11. 30(월) 11:00
10.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2009. 11. 0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79호

▶2009년 9월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09월중 주정차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 과태료 납부고지서(정기분)를 지방세법 제51조의 2규정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2. 0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 목 : 2009년 9월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지방세법 제52조 (공시송달)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덕동 543-1 (주) 휴림종합건설 등 2,531명
4. 공시송달 공고 기간 : 2009.12.04 ~ 12.18 (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032-453-2890) 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2009.12.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가산된 독촉분 고지서가 발송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처비치 및 홈페이지 참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8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0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시책의 홍보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통장의 신분증 발급에 관
한 행정 절차 및 관련서식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 : 032)453-2230, FAX : 032)453-2239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ㆍ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행정시책의 홍보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통장의 신분증을 발급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통장의 업무수행시 주민에 대한 신뢰감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 (안 제2조의2)
- 통장증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안 제2조의3)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3호 및 제5호 서식)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 본 문 : “별첨”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통장 신분증 발급 추진계획」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

-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하여 통장에게 발급하는 통장 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②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위촉 후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해촉한 때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폐기하고 해당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동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의하여 통장증의 발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3(통장증의 사용)

- ① 통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통장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 정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 서식, 별지 제3호의3 서식 및 별지 제3호의4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의2 서식 】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주 소 :
6. 위 축 일 자 :
7. 사 유 :

위와 같이 통장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의3 서식 】

통 장 증 발 급 대 장 (동 주민센터용)

【 0 0 0 동 】

결 재 란			통장증 번 호	발급일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	재 발 급		사 진	비 고
담당자	담 당	동 장								회수여부	사 유		

【 별지 제3호의4 서식 】

통 장 증 발 급 대 장 (구 본청용)

결 재 란			통장증 번 호	발급일자	발 급 대 상 자					발급구분 (신규, 재발급)	재발급 사 유	사 진	비 고
담당자	담 당	과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 별지 제5호 서식 】

반 원 명 부

가구번호	세대번호	세대주											반 장	통 장			
			(작성일 : 20 년 월 일)										확 인				
전주소																	
주 소								가옥주									
세대주와의 관 계	번호	성 명	생년월일	민방위대편성			편 성 계 외 내 용						학력	직업	비고		
				지역	직장	기술	현역	보충역	동예	일예	학훈	기타					
동 거 인	성명	세대주 와의 관 계	생년 월일	민방위대 편성			편 성 계 외 내 용						학력	전출 입 일자	전입 일자		
				지역	직장	기술	현역	보충역	동예	일예	학훈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위해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 ③ (생략) 〈 신 설 〉	<u>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 제2조(통장 위해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하여 통장에게 발급하는 통장 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위촉 후 7일 이내에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해촉한 때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폐기하고 해당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⑤ 통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의한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의하여 통장증의 발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3(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은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통장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6조에서 정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시

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고시 제 2009 - 001호

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전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7-47(2007.08.1)호에 의하여 준공인가 된 구월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전 고 시 합니다.

2009. 12. 2.

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최성준

1. 사업의 명칭 :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0, 23, 24번지
 - 나. 면 적 : 311,095.4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사업시행자
성 명	구월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성준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1-17번지

4. 공사완료고시일 : 2007. 08. 01

5. 이전고시 내용

가. 대지의 용도별 면적

[단위:㎡]

구 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계	비고
1단지	172,039.5	4,949	1,147	178,135.5	
2단지	114,385.3	916	1,140	116,441.3	
3단지	15,351.6	1,167	-	16,518.6	
-	301,776.4	7,032	2,287	311,095.4	

나. 공공시설의 용도별 면적

- 도로:18,754㎡, 학교예정부지:22,663㎡, 공용청사:1,388㎡, 공원:1,446㎡

다. 건축시설의 종류별·규모별 내역

1) 종류별 내역 : 지하2층 ~ 지상37층 103개동(8,9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규모별 내역 : 연면적 1,474,123.16㎡

아 파 트			기타건축시설		비고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구 분	연면적(㎡)	
65.98	196	17,336.05	1단지	힐캐슬프라자	19,551.23
87.98	633	73,992.05		분산상가1	348.15
104.61	802	113,203.03		분산상가2	519.21
111.65	1,165	176,644.60		유치원	578.16
111.20	946	143,121.58	2단지	상가	748.88
111.23	210	31,720.77		유치원	578.16
114.79	700	205,539.60	3단지	상가	2,238.76
114.02	692	108,348.21			
114.68	1,323	106,651.99			
147.74	1,854	376,665.51			
168.11	413	96,337.22			
계	8,934	1,449,560.61			24,562.55

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 권리자수

구분	아 파 트 (공급면적 m ²)												근린생활 시설	유치원	비 고
	계	68.95	87.98	104.61	111.65	111.20	111.23	114.79	114.02	114.68	147.74	168.11			
계	8,934	196	633	802	1,165	946	210	700	692	1,323	1,854	413	223	2	
조합원	5,673	113	199	411	624	44	18	682	276	1,110	1,793	403	110		
일 반	3,261	83	434	391	541	902	192	416	416	213	61	10	113	2	

마.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내역 및 이전내역(조합사무실에 별도 비치) - 별첨(게재생략). 끝.